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김세종

I. 개관

1. 의의

- 현대사회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생명과 신체의 침해는 수적으로 살인죄나 상해죄를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바, 과실치사상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형법은 제14조에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실범의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이 됨을 선언하고 있음
- 각종 보호법의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므로 형법은 과실치사상의 죄를 두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2.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과 신체’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형법 규정(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과실치상	§ 266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 267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268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특별법 규정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환경범죄단속법)	§ 52(3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 57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 95②	업무상 과실로,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전력기술관리법	§ 27의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 41 ②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저수지댐법)	§ 30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 34②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 39의2 ②	업무상 과실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 94②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업무상 과실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 진흥법	§ 86①	업무상 과실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38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치상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 48⑨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거나,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死傷)에	치상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이르게 한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 65④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치상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 관한법률(2016.1. 26. 시행)	§ 43②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선원법	§ 16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또는 해원,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선장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해원 : 3년 이상의 징역 선원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6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치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농약관리법	§ 31조의3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2017.7.25. 시행)	§ 78②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 66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포함

- 과실치사상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 이론의 여지 없음

나. 과실치상죄 ☞ 제외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설정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

다. 환경범죄단속법위반죄 ☞ 제외

-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하므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은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로서, 2015. 1. 1.부터 시행됨
-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 최근 신설된 규정으로서, 환경범죄단속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발생빈도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향후 구체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저수지댐법위반죄 ☞ 제외

- 저수지댐 제30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 발생빈도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 제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는 단 2건에 불

과하였음

- 폐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 및 유사석유의 유증기가 폭발한 사고

- 발생빈도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사. 시설물안전법위반죄 ☞ 제외

- 시설물안전법 제39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발생빈도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아.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 제외

- 위 각 구성요건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발생빈도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위반죄 ☞ 제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로 처벌된 1건 외에 위 각 구성요건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발생빈도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차.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선원법, 농약관리법, 철도안전법위반죄 ☞ 제외

- ‘과실’을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실치사상범죄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24조(보건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는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높고, 실무상 발생빈도도 적다고 볼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단일범으로만 약 40건이 있었고,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경합범으로 기소된 사례도 다수 확인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만 기소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할 필요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 중에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외에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제66조의2 위반죄 전부를 설정범위에 포함할 필요 있음

타.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 267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 268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 66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III.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가.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 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징역형 또는 금고형

3. 과실치사상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

가. 선고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과실치사	수	0	28	28
	비율	0	100	100.0
업무상과실치사	수	32	320	352
	비율	9.0	90.9	100.0
업무상과실치상	수	32	274	306
	비율	10.4	89.5	100.0
중과실치사	수	2	6	8
	비율	25.0	75.0	100.0
중과실치상	수	3	9	12
	비율	25.0	75.0	10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수	1	39	40
	비율	2.5	97.5	100.0
전체	수	70	676	746
	비율	9.3	90.6	100.0

나. 징역형의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과실치사	수	0	0	1	0	14	3	4	6	0	0	28	8.0
	비율	0.0	0.0	3.5	0.0	50.0	10.7	14.2	21.4	0.0	0.0	100.0	
업무상과실치사	수	0	5	18	1	104	94	60	57	7	2	352	8.44
	비율	0.0	1.4	5.1	0.2	29.5	26.7	17.0	16.1	1.9	0.5	100.0	
업무상과실치상	수	0	1	42	2	142	67	30	18	2	1	306	7.05
	비율	0.0	0.3	13.7	0.6	46.4	21.8	9.8	5.8	0.6	0.3	100.0	
중과실치사	수	0	0	0	0	1	1	1	5	0	0	8	10.5
	비율	0.0	0.0	0.0	0.0	12.5	12.5	12.5	62.5	0.0	0.0	100.0	
중과실치상	수	0	0	0	0	3	4	2	3	0	0	12	8.83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비율	0.0	0.0	0.0	0.0	25.0	33.3	16.6	25.0	0.0	0.0	100.0	
산업안전보건법위 반	수	1	1	2	1	16	9	3	7	0	0	40	7.5
	비율	2.5	2.5	5.0	2.5	40.0	22.5	7.5	17.5	0.0	0.0	100.0	
전체	수	1	7	63	4	280	178	100	96	9	3	746	7.82
	비율	0.1	0.9	8.4	0.5	37.5	23.8	13.4	12.8	1.2	0.4	100.0	

4. 대유형 분류

가. 1개의 대유형으로 구성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국한됨
- 특별법 규정이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대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함이 타당

5. 중·소유형 분류

가. 과실치사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으므로(2년 이하의 금고),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의범은 물론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의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불법의 차이가 중대하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도 법정형이 동일하기는 하나, ‘교통사고 치상’과 ‘교통사고 치사’로 소유형을 분류하였

음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고(5년 이하 및 7년 이하), 주의의무의 성격도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6. 최종 유형분류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2년 ↓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5년 ↓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5년 ↓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7년 ↓			

IV. 형량범위 검토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양형기준 해설상의 형량범위 설정 근거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함

▣ 법정형 및 행위 유형이 유사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고의

또는 결과적가중범의 형태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범죄의 양형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함

2.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유형(제2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경과

●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5	18	24	30	36		
교특법 (제3조제1~2 항)-상해	수	0	2	49	12	259	0	100	36	10	2	0	0	0	0	470	6.65	
	비율	0.0	0.4	10.4	2.6	55.1	0.0	21.3	7.7	2.1	0.4	0.0	0.0	0.0	0.0	100.0		

- 교통사고 치상의 평균형량은 6.65월
- 금고 6월이 전체의 5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금고 8월, 금고 4월, 금고 10월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일반 교통사고범죄 유형 중 치상죄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99.2%가 금고 4월 - 1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따라서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을 4월 - 10월, 감경영역을 6월 이하, 가중영역을 8월 - 1년6월로 설정함 ⇒ 교통사고 치상의 경험적 양형 실무의 대부분을 포섭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업무상과실치상	수	0	1	39	2	132	62	0	27	15	1	2	1	282	7.02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비율	0.0	0.4	13.8	0.7	46.8	22.0	0.0	9.6	5.3	0.4	0.7	0.4	100.0	
중과실치상	수	0	0	0	0	2	4	0	2	3	0	0	0	11	9.09
	비율	0.0	0.0	0.0	0.0	18.2	36.4	0.0	18.2	27.3	0.0	0.0	0.0	100.0	
전체	수	0	1	39	2	134	66	0	29	18	1	2	1	293	7.10
	비율	0.0	0.3	13.3	0.7	45.7	22.5	0.0	9.9	6.1	0.3	0.7	0.3	100.0	

- 평균형량은 7.10월로서 교통사고 치상의 평균형량 6.65월보다 다소 높음
- 형량분포는 금고 6월이 전체의 4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금고 8월, 금고 4월, 금고 10월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분포와 유사

■ 기본영역 : 4월 - 10월

- 평균형량 금고 7.10월, 금고 6월이 45.7%, 금고 8월이 22.5%로 그 다음을 차지
- 법정형(5년 이하)이 동일하고 평균형량(6.65월) 및 형량분포도 유사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
- 기본영역에 92.2%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8월 - 2년

-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설정 당시 실제 선고된 최고형이 1년2월 2건이었으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경우 그보다 높은 1년6월,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합계 3건이 있고, 평균형량도 다소 높은 점을 반영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으로 설정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유형(제3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경과

●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5	18	24	30			36
교특법 (제3조제1~2 항)-사망	수	0	0	7	0	88	0	104	111	95	8	0	16	3	0	0	432	9.51
	비율	0.0	0.0	1.6	0.0	20.4	0.0	24.1	25.7	22.0	1.9	0.0	3.7	0.7	0.0	0.0	100.0	

- 교통사고 치사의 평균형량은 9.51월
- 금고 6월, 8월, 10월, 12월이 20%대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일반 교통사고범죄 유형 중 치사죄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92.2%가 금고 6월 - 1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따라서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기본영역을 8월 - 1년6월, 감경영역을 4월 - 10월, 가중영역을 1년 - 3년(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상한은 높게 설정)으로 설정함 ⇒ 교통사고 치사의 경험적 양형실무의 대부분을 포섭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업무상과실치사	수	0	5	18	1	89	81	2	51	57	1	6	2	313	8.49
	비율	0.0	1.6	5.8	0.3	28.4	25.9	0.6	16.3	18.2	0.3	1.9	0.6	100.0	
중과실치사	수	0	0	0	0	1	1	0	1	5	0	0	0	8	10.50
	비율	0.0	0.0	0.0	0.0	12.5	12.5	0.0	12.5	62.5	0.0	0.0	0.0	100.0	
전체	수	0	5	18	1	90	82	2	52	62	1	6	2	321	8.54
	비율	0.0	1.6	5.6	0.3	28.0	25.5	0.6	16.2	19.3	0.3	1.9	0.6	100.0	

- 평균형량은 8.54월로서 교통사고 치사의 평균형량 9.51월보다 약 1개월 가까이 낮음
- 형량분포는 금고 6월이 전체의 2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금고 8월이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고 10월과 12월은 그보다 낮은 16.2%, 19.3%를 차지하고 있음

▣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 평균형량 금고 8.54월, 금고 6월이 28.0%, 금고 8월이 25.5%로 그 다음을 차지
- 법정형(5년 이하)이 동일하고 평균형량(9.51월) 및 형량분포도 유사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
- 기본영역에 63.9% 포섭

▣ 감경영역 : 4월 - 10월

▣ 가중영역 : 1년 - 3년

4. 과실치사 유형(제1유형)

▣ 과실치사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과실치사	수	0	0	1	0	14	3	0	3	6	0	0	0	27	7.93
	비율	0.0	0.0	3.7	0.0	51.9	11.1	0.0	11.1	22.2	0.0	0.0	0.0	100.0	

- 평균형량은 7.93월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평균형량 7.10월보다 높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평균형량 8.54월보다는 낮음
- 형량분포는 금고 6월이 전체의 5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금고 12월이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고 8월과 10월은 각 11.1%를 차지하고 있음

■ 기본영역 : 6월 - 1년

- 51.9%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금고 6월을 기본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 차이 반영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과 치사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정
- 기본영역에 96.3% 포섭

■ 감경영역 : - 8월

■ 가중영역 : 8월 - 2년

- 법정형의 상한이 금고 2년으로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법정형 상한 5년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평균형량은 과실치사가 더 높으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유형과 동일하게 설정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제4유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	1	1	2	1	12	9	0	3	6	0	0	0	35	7.54
	비율	2.9	2.9	5.7	2.9	34.3	25.7	0.0	8.6	17.1	0.0	0.0	0.0	100.0	

- 평균형량은 7.54월로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평균형량 7.10월보다 높고, 과실치사의 평균형량 7.93월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평균형량 8.54월보다는 낮음
- 형량분포는 징역 6월이 전체의 3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징역 8월이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역 10월과 12월은 8.6% 및 17.1%를 차지하고 있음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유형과의 관계

-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업무상과실·중

과실치사의 권고 형량범위를 모두 포섭할 필요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경우의 평균형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평균형량보다 낮고, 형량 분포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 영역의 하한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34.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징역 6월을 기본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 차이 반영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과 치사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정
- 기본영역에 85.7% 포섭

■ 감경영역 : 4월 - 10월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와 동일하게 설정

■ 가중영역 : 10월 - 3년6월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평균형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그 하한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8월)보다는 높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1년)보다는 낮게 설정
- 법정형 상한이 7년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5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3년6월로 설정

6. 최종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를 추출함
- ▣ 과실범으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침해라는 결과불법이 동일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주로 참조함

2.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가. 특별감경인자(행위)

1)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이를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공동의료행위와 같은 분업적 공동작업행위 과정에는 일종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며, 특히 분업에 참가한 의료인 사이에 지시나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참가 의료인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기 자신의 분업영역에 대한 독자적인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수평적 분업)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 자체가 부정됨

- 공동작업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 사이의 상하관계 등에 따라 신뢰의 원칙이 제한되어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작업자의 과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1)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거의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인자)로 규정되어 있음

2)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살인, 성범죄(사망 결과) 등 15개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합의의 상대방인 유족과 인적 대면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탓에 최대한 노력에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야 인정되는 점에서 ‘상당 금액 공탁’과 구별되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이나 피해회복의 정도 면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와 별다른 차이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특별가중인자(행위)

1)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경우, 구공판 되는 사건의 대부분에 위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분석대상판결 확인 결과,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221건 중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치료기간 4주 이상인 사건이 217건으로 98.2% 차지) ☞ 사실상 제2유형은 가중영역에서 출발하게 되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고려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였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행위반 가치가 중한 경우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이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1) 동종 누범

-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마.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대한 검토

1)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2) 보험 가입

-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하며, 실무상으로도 이를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

험 또는 공제 가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일반가중인자(행위)

1)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에 대한 검토

1)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대상 판결 검토 결과, 실무상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음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적시한 사례는 없었음
-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범죄가중범(도주차량)과 같이 이를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 의료사고 등에서 사후에 의료기록 등을 변조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음

3)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V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